

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- ☐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 ·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.
- ☐ 「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☐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001호
「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☐ 2023년 7월 18일 전부개정되어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「국내
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, ‘입양가정 지원’으로
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제명을 입양 관련 지원 전반을 포괄할
수 있도록 변경하고,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 · 표현

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
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,

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 수립·시행을
지원사업에 추가로 신설하였고, 양육보조금과 입양축하금 등의 지급
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
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